

④ 이 법에 따른 연합회는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모든 권리·의무와 재산 관계를 승계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회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연합회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로부터 기산한다.

◇개정이유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권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이용권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이용권의 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를 법정법인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이용권”의 정의를 문화소외계층이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를 말하는 것으로 함(안 제2조제1항 제4호 신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5조의3 신설).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4 제1항).

라.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회관 상호간의 협력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1항 신설).

마.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권리·의무와 재산관계를 승계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1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문화체육
관광부장관 최광식

●법률 제11314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복합영상물제공업: 비디오물감상실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노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공중에 제공하는 영업

제3조제2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영상문화의 다양성·공공성 증진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임원(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과 감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
6.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가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제2항 중 “위촉”을 “임명”으로, “성(性)과 연령”을 “성(性)과 연령, 전문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장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원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3호 중 “제33조제1항”을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57조 또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7조제1항 또는 제58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관여 금지)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의 이해와 관련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15조 중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며 비상임으로 한다.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에 제5호의2, 제6호의2 및 제10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영화산업 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

6의2. 영화 관련 교육·연수 등과 관련된 사업 지원

10의2. 남북 간 영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영화 상영 전후에 상영하는 광고영화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영등급을 분류받을 수 있고, 예고편영화는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상영등급을 분류하고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 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광고”를 “광고(영상물 형태의 광고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0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제작·유통하거나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음악영상파일은 제외한다.

제54조제1항 중 “등급분류 또는 등급분류의 보류결정”을 “등급분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다시 하거나 등급분류의 보류결정을 취소하고”를 “다시 하고”로 한다.

제6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비디오물감상실업”을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비디오물감상실업과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을 “비디오물감상실업,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으로 한다.

제9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94조제7호 중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을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 또는 복합영상물제공업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과 감사는 이 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임기 개시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복합영상물제공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디오물감상실업으로 등록하여 복합영상물제공업을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제58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하여 복합영상물제공업을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제58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이유

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일치시켜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선정적·폭력적인 내용과 장면을 담고 있는 예고편 영화, 영화 광고·선전물, 음악영상파일 등이 청소년들에게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예고편 영화의 경우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추가하고, 청소년 유해성 확인을 받아야 하는 영화 광고·선전물에 영상물 형태의 광고·선전물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며, 음악영상파일의 경우 대가없이 유통되더라도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는 한편, 최근 청소년들의 일탈장소로 악용되고 있는 멀티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복합영상물제공업을 신설하고,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는 업종에 복합영상물제공업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디오물감상실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게임물을 이용하거나 노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공중에 제공하는 영업을 복합영상물제공업으로 정의하여 멀티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16호라목 신설).

- 나.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장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안 제10조제2항 신설).
- 다. 영화진흥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변경함(안 제15조).
- 라. 영화진흥위원회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함(안 제19조제2항 및 제3항).
- 마. 예고편 영화의 경우 전체관람가 등급에 더하여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추가함(안 제29조제2항 단서).
- 바. 청소년 유해성 확인을 받아야 하는 영화 광고·선전물에 영상물 형태의 광고·선전물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안 제32조제1항).
- 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이더라도 음악 영상과일인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받도록 함(안 제50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 아. 영화의 상영등급분류 또는 비디오물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함(안 제90조제2항 단서 신설).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2년 2월 17일

국무총리 김 황 식

국무위원
문화체육
관광부장관 최 광 식

●법률 제11315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스포츠”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2. “전문 이스포츠”란 이스포츠 선수들이 행하는 이스포츠 경기 활동을 말한다.